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3. 30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3.1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.3.20.

다. 상정일자 :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5.3.27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5.3.30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행정과장 서문석

가. 제안이유

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,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던 생활보장위원회의 근거 및 기능 등을 삭제(안 제1조, 제3조제2항, 제4조제2항)
- 2)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·건의 사항 중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3조제1항제5호)
- 3)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·운영 근거를 마련(안 제4조의2)
- 4)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(안 부칙)
- 5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, 동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-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, 향후 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및 지역보호 체계 확립과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 동 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마포구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